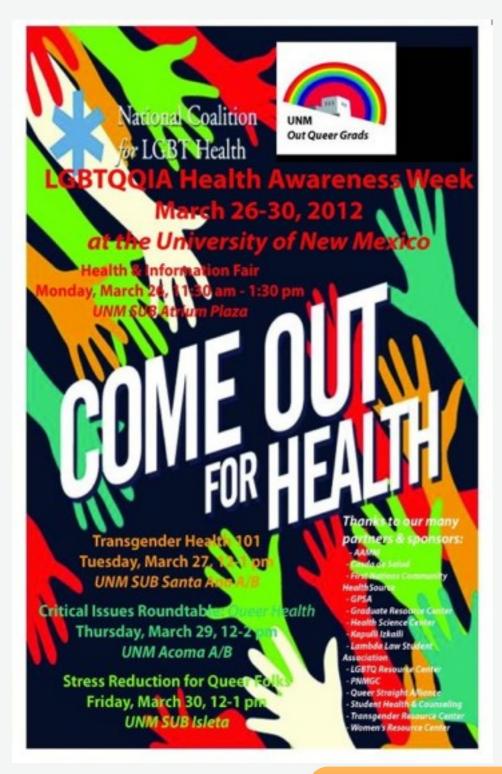
성소수자 관점에서 본 한국의료의 문제점

서울대학교 최은경

건강정책학회SIG:

한국 의료서비스의 젠더 및 성소수자 감수성(Sensitivity)

성소수자에게 있어서 의료란?..



LGBT 건강 선언(National Coalition for LGBT Health)

- LGBT 혐오와 폭력, 낮은 건강보험, 제도적 차별로 인한 스트레스, 보건의료체계의 문화적 역량 부족으로 LGBT 인구는 중요한 건강 불평등에 노출된다(..)기존과 다른 가족 체계나 전통적 모델이 아닌 간병인을 지지하지 않는 보건의료시스템이 불평등을 더 심화시킨다. (...) 효과적 조치를 위해서 다음의 10가지 원칙이지켜져야 한다. 이들 원칙은 LGBT 특유의 주제만이 아니라 이성애자 개개인, 독거노인, 이주민 등에게도 적용된다.
- <u>치료에 대한 접근 보장</u>: 직장 보험이 노동자 동성 파트너에 적용 되지 않는 문제, LGBT 고용 보호가 부재한 문제(직장보험의 기 밀 유지 문제)
- LGBT 정체성 및 가족의 포함: "가족", "부모","자녀" 등의 용어에서 LGBT가 배제되는 문제. LGBT 청소년, 노인, 성인 피후견인들의 복지 정책이 없는 문제
- 정신건강균등의 보장: 신체질병과 동등한 수준으로 정신질병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 점. LGBT 인구가 스트레스로 인하여심한 정신 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점.

건강정책학회SIG:

한국 의료서비스의 젠더 및 성소수자 감수성(Sensitiv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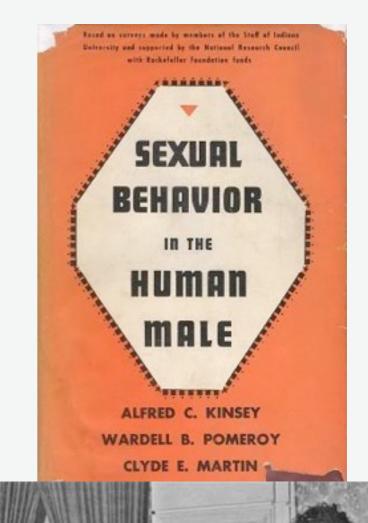
- <u>문화적 역량의 이행과 실천</u>: 보건의료 제공자들이 문화적 역량을 충분 히 이해하고 포용해야 하는 점. LGBT에 대한 편견을 제거하는 것
- 사생활 보호와 기밀 유지를 위한 건강정보테크놀로지 보장: 환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건강정보테크놀로지가 도입되어야 하는 점
- LGBT 인구 정보와 건강 정보의 정기적 수집: 대부분의 건강 데이터에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관련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는 문제
- <u>트랜스젠더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u>: AMA에서는 트랜스젠더에게 모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보험에서 보장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음.
- <u>포괄적 성 건강, 재생산 건강 서비스의 제공</u>: LGBT 개개인의 성생활 및 재생산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지지해야 함. (가족 계획, 낙태, 재생산 건강 정보 및 피임, 임신 및 출산, 성병 및 HIV/AIDS의 예방과 치료 등)
- HIV/AIDS 유행에 대한 대응: HIV/AIDS 취약계층의 문제를 인식하고 HIV/AIDS 예방 및 치료가 다른 성병 예방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당뇨 나 심질환 등 다른 흔한 질병과 함께 다루어질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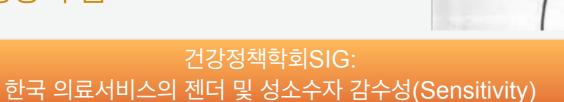
- **LGBT의 건강:** 더 나은 이해를 위한 기초 쌓기(The Health of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People: Building a Foundation for Better Understanding: 2011, IOM)
 - 보건의료 접근에 있어서의 장벽
 - 낙인 Stigma (Herek, 2009)
 - 개인적 수준(Enacted stigma, felt stigma, internalized stigma)-보 건의료제공자의 편견이 낙인을 강화시키고, 의료서비스 접근의 장벽이 됨. (IOM, 1993; Jillson, 2002)
 - 제도적 장벽
 - 제도적 낙인
 - 보건의료제공자들의 지식, 스킬 훈련의 부족: 환자-보건의료제공 자와의 소통 문제
- Healthy People 2010
 - personal and cultural barrier => 많이 보고되어 있음
 - structural, financial barrier => 복지 체계의 문제, 아직 연구 필요함
 - 청소년 문제

성소수자의 의학적 권리

건강정책학회SIG:

- 1981년 미 의사협회는 동성애 정체성을 성교를 통한 감염(Sexually Transmitted Infection)과 이성애로의 전환 문제(aversion therapy) 외에는 문제삼지 말아 야 한다는 정책제시 => 1995년 정책에서는 의학적 행위에서 동성애자라는 정체성을 무시해서는 안 된 다는 정책으로 전환
 - 성소수자의 경우 비성전환-이성애자와 다른 정체 성을 진단 및 치료 과정에서 배제하는 것/포함시 키는 것 중 어느 것이 성소수자가 충분한 의학적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해 주는가?
- 주류 의학 담론을 여러 소수 인종, 성별, 성정체성으 로 다변화, 다층화하면서 재구성하기. 차이에 기반한 성적 시민권(sexual citizenship)을 생물학적 시민권 (biomedical citizenship)에 통합시키기.
- AIDS 유행이 미친 영향이 큼





- ◎ 성적 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르는 공통적인 건강-위험
 - I) 정체성이 밝혀지는 순간(의료의 순간과 밀접한 관련) 즉시 사회적으로 낙인, 배제, 차별을 당할 수 있는 스트레스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
 - 2) 의료적 지지가 필요한 트랜스젠더들은 낙인과 차별의 대상이 되며 충분한, 신뢰할 만한 의료 서비스를 수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
- 위험은 성소수자 집단이 보다 위험-추구 행동(흡연, 알코올, 비만 등)을 하 도록 하거나 혹은 통상적인/긴급한 의료서비스 접근으로부터 배제시키는 결과를 낳음
- => 의료인 사이의 내재해 있는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불식시키
 기
- => LGBT 의료 수요에 필요한 공중보건학적 연구를 수행하기..
- => 전통 이성애 가족 중심 복지-보건 체계의 변화

건강정책학회SIG:

한국 의료서비스의 젠더 및 성소수자 감수성(Sensitivity)

국내의 경우-트랜스젠더의 의학 문제

- 한국전쟁 직후부터 성전환 수술 실시 기사는 곧잘 찾아볼 수 있음.
- 그러나 현재까지 대부분 고가에다 일부 병원서만 시술이 이루어지며 전형적 비보 험 영역
- 개인에게만 부담되는 위험에 더하여 성기재건까지 포함한 성전환 시술이 이루어져 야 호적 변경이 가능한 법적 현실로 인해 더욱 더 많은 트랜스젠더들이 이러한 위 험을 무릅쓰고 시술 받고 있음.
- 게다가 개개인의 성전환 全 과정을 관장하는 의료진이 극소수이기 때문에 각각의 의료적 처방이 부작용을 낳았을 때 쉽게 의료 서비스를 접근하기 어려움
- 국내에 숙련된 성전환 시술 전문의가 거의 없고 성전환 과정 전반에 대해 상담할 만한 성별-전문가(gender specialist)가 없음
- 대부분의 트랜스젠더들은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한 집단 내 상호 정보 공유를 통해 믿을만한 의료 기관을 찾아감. 그러나 이들 의료 기관이 소수에 독점된 기관들이어 서 믿을만한 시술을 받지 못해 큰 부작용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국내 가격 때문에 많은 수의 트랜스젠더들이 태국 등지 의료 관광이 발달한 국가에서 성전환 시술을 받음. 이 경우 후속 치료나 부작용 조절 등 의 이후 절차가 생략될 수밖에 없는 조건에 놓이게 됨

건강정책학회SIG:

한국 의료서비스의 젠더 및 성소수자 감수성(Sensitivity)

트랜스젠더 의학적 시술

- 성전환 과정
 - Ⅰ 단계 정신과적 상담 및 진단
 - 대부분의 국내 사례에 있어 트랜스젠더 전문 정신과 상담이 있는 경우는 드뭄. 시술받기 전 심리 검사와 2-3회 가량의 상 담 등 요식적인 절차. 장기간의 상담과 의학적 치료의 부재
 - DSM-V: gender identity disorder => gender dysphoria(2012.7.)
- 2 단계: 호르몬 주입 치료
 - 자기 주도의 호르몬 주입
 -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신과 진단 및 상담 서비스가 없어 정신과 진단 없이 (현재는 많이 줄은 것으로 보이나) 성형외과 등에서 단 시간 내 호르몬 처방을 내리는 경우도 있으며 시장 등에서 야매로 구입하는 등 구입

건강정책학회SIG:

한국 의료서비스의 젠더 및 성소수자 감수성(Sensitivity)

- MTF의 경우 호르몬을 경구로 주입할 수도 있으나 FTM의 경우 경구를 통한 주입이 불가능하여 패치나 근육주사를 통해 처방하며 이들 주사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훈련하면 서 놓는 경우가 많음.
- 주치의의 지도와 처방 아래에 주사 놓는 방법을 교육받지 못하고 있는 편이며 한번 쓴 주사기를 다시 사용하는 등 위 생상 문제에 대해서도 대처하지 못함
- 호르몬 처방 후 생기는 신체상의 변화/사회적 역할 변화 등에 대한 지지나 상담 등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 호르몬 처방은 여타 의학적 조건 하에서도 보험 적용이 되는 경우이며 국내에서 MTF나 FTM을 대상으로 처방되는 호르몬들 역시 보험 적용이 되는 약제들임에도 불구하고 보험 적용을 안 시키고 비보험 항목으로 돌려 놓아 약값이 5배 이상이 되기도 함

- 3단계: 외형 위주의 수술
 - 외형 수술은 성기를 제외한 인체 중 외형 부분에 대한 수술
 - 성기를 제외한 외형 수술을 받는 것은 호르몬 주입 이상의 큰 사회적 외형의 변형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떤 수준의 수술을 받을지를 미리 결정하는 6개월의 대기 기간을 둘 것을 권고하기도 하나, 국내에서는 그런 대기 절차 없이 수술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
 - 개인병원에서 시술 받고 당일 퇴원했다가 출혈 과다 등 사고가 난 경우도 종종 있음
 - 트랜스젠더로서 직장에 커밍할 수 없어 이들 수술을 받고 난 후 바로 직장으로 복귀함에 따라 후유증이 더 심각해진 사례
 - 비트랜스젠더들도 비슷한 성형 수술을 받기 때문에 이들 수술을 받기 위해 정신과 치료 차원의 처방이나 권고가 사전에 꼭 필요하 지 않다고 말하고 있으나, 강요되고 있는 실정

- 제4단계: 성기 위주의 수술
 - 모두 몇천만원을 호가하는 고가의 수술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체 트랜스젠더 중에 1-3%만 이들 수술까지 완료
 - 과거 대법원 성전환자 호적정정 판결은 성기재건까지 완결해야 호적정정이 이루어지도록 했으나, 최근 성기재건 없이도 호적 정정 인정하는 판결이 나옴(서울서부지방법원 판례. 2013.3.15) 그러나 이러한 취지를 반영한 대법원 판례나 법률은 없는 상황.
 - 국내 트랜스젠더들은 사회적으로는 성기 재건까지 요구되면서 한편으로 이들 시술이 보험에도 해당되지 않음. 트랜스젠더의 자기 만족감과 삶의 질을 위해서라도 성기제거/재건수술은 중 요한 수술에 해당함. 국가 보험체계를 갖춘 국가 중 서부 유럽, 영국, 호주 등지에서는 이들 수술이 국가 보험의 보상 범위에 포함됨. 영국 같은 경우 한편 GID로 진단받았다는 증명만 있으 면 충분.(Gender Recognition Act 2004)

- ◎ 태국 등지에서의 시술의 문제점
 - 현재 많은 수의 트랜스젠더들이 국내보다 저렴한 시술비와 높은 기술 수준, 만족스러운 서비스 때문에 의료관광 차원에 서 태국으로 건너가 1,2차 수술을 받고 있으나, 태국에서의 시술 결과는 이들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보이나 수술 후 후속 관찰이 가능하지 않고 병원 간 협진을 할 수 없기 때 문에 이후 부작용과 후유증이 심각한 경우 대처 방법이 없음.
 - 특히 성기재건수술의 경우 결과가 치명적인 경우들도 종종 초래

국내의 경우-성소수자 일반의 의학 문제

- 의료 서비스 접근에 대한 부담
 - 커밍아웃이 이루어지거나 의도치 않게 아웃팅이 될 경우 사회 로부터 배제되거나 낙인화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항시 안고 삼
 - 의료인이나 의료 문화 내 편견: 성소수자가 의료 현장에서 의료인으로부터 적대감을 느끼거나 불쾌한 경험을 받거나 혹은 의료인의 성(별)정체성에 대한 몰이해를 경험하게 되면 더욱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꺼리게 됨.
 - 성소수자 대상 지역 사회 1차 의료 센터가 있는 서구와 달리 국내에는 관련 병원은 전무하며 관련 정보 또한 희박.. 간혹 있 는 정보 또한 서울에 집중되어 있음.
 - 의료 서비스 접근에 따르는 어려움은 성인보다 청소년에게 더욱 두드러짐 => 가족 내 커밍아웃의 두려움

건강정책학회SIG: 한국 의료서비스의 젠더 및 성소수자 감수성(Sensitivity)

국내의 경우-성소수자 일반의 의학 문제

- 사회적 차별, 낙인, 배제의 경험으로 인한 스트레스
 - 성소수자 대상 사회인식설문조사 결과는 커밍아웃 혹은 아웃팅 이후 52%가 비난과 욕설 등 사회적 불이익을 경험하고 이들 중 8.5%는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경험함을 보여줌.
- 청소년의 경우 강병철 등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동 성애자 중 70% 이상이 자살에 대해 생각해본 경험이 있고, 18.1%가 '매우 자주 해봤다'고 응답했으며, 실제 자살을 시도해본 경우가 45.7%로 절반 가까이에 이르고 있음.
- 청소년 성소수자에게 필요한 상담 서비스나 의료 전문 서비스가 거의 뒷받침되고 있지 않음.

건강정책학회SIG:

한국 의료서비스의 젠더 및 성소수자 감수성(Sensitivity)

국내의 경우-가족 중심 보건의료체계, 의료 결정권

● 병원 방문권

- "이 씨는 김 씨의 보호자였다. 그는 100일 동안 아픈 김 씨를 데리고 꼬박 병원에 갔고, 입원한 김 씨를 도맡아서 간병했다. 한 달에 200~300만 원씩 8개월 동안 총 2000만 원의 치료비를 지인들로부터 모금해 직접 부담하면서 어떤 치료를 할 것인지도 실질적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 씨는 간병하거나 치료비를 대면서도 김 씨의 가족과 병원으로부터 '보호자'로 인정받지 못했고, 병원 치료와 관련한 형식적인 결정에서는 김 씨의 가족에게 의지해야 했다."(프레시안, 2013.5.3)
- ◎ 의료결정권-동의의 문제
 - 의료인은 환자의 동의만 있으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수술을 할수 있으나, 의료기관은 보호자의 동의를 고집(성전환 수술도 마찬가지)
 - 보건복지부령상 환자의 질병 정보를 친족 외에는 타인에게 알려줄 수 없고, 의료사고가 났거나 수술비를 청구했을 때 분쟁을 우려하기 때문

건강정책학회SIG: 한국 의료서비스의 젠더 및 성소수자 감수성(Sensitivity)

- [비혼 여성의 사례] "제가 자궁내막증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건강이 안좋으시고 형제들을 불편하게 오라가라 하고 싶지 않아서 제가 알아서 해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수술동의서를 써야했는데 친구는 안되고 가족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친언니에게 전화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결혼한 언니는 또 안된다는 거예요. 혈연이어도 결혼한 언니는 가족이 아니야? 황당한 거죠. 그래서 누구여야 되느냐고 물었더니 부모님 아니면 남자형제여야 한다고. 수술동의서 작성할 때 온몸으로 적나라하게 우리 사회가 비혼 여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체험하는 계기였어요." (가족구성권네트워크, 『비정상 가족들의 비범한 미래기획』, 2012)
- [레즈비언 커플의 사례] 작년 초에 내 파트너가 갑작스레 병원에 실려가 입원을 하게 되었다. 한밤중에 동의서를 쓰려고 했는데 병원 측에서는 우리가 가족이상의 사이라고 말을 해도 둘은 친구사이이고 사인을 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100만원 가량의 보증금을 내면 입원 동의서를 쓸 수 있다고 하였다. 어쩔 수없이 친한 게이 친구에게 연락을 해서 그가 남편인 것처럼 말을 해서 입원을할 수 있었던 웃지 못할 일이 있었다. (친구사이,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자료집』, 2006)

- 현재 의료법 상 '보호자'에 관한 정의 규정은 없으나 관행상 가족에게 지나치게 의지
- 「정신보건법」제21조(보호의무자) 정의규정: 민법상의 부 양의무자 또는 후견인 순위로 보호의무가 있다고 적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환자의 권리> 제9조: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가 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동행한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사전의료지시서?
- 성년후견제?

건강정책학회SIG:

한국 의료서비스의 젠더 및 성소수자 감수성(Sensitivity)

국내 성소수자운동 건강 관련 요구안

- ◎ 2007년 대선 성소수자 10대 요구안 중
 - 트랜스젠더/성전환자들의 행복추구권, 건강권, 노동권 보장(성전환 자성별변경특별법 제정, 성전환 시술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 고용차 별 금지, 긴급 의료지원 센터 설립, 트랜스젠더 병역 면제 규정 대폭 완화)
- 2012년 19대 총선 성소수자 인권 5대 영역, 20개 과제 실현을 위한 녹색당, 진보신당, 통합진보당과 성소수자인권운동 및 지지단체 정책 연대
 - 성적 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따른 건강불평등 유형 개발,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의료 현장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 트랜스젠더/성전환자들의 현저히 낮은 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호 르몬 투여 및 수술 등 성전환 과정에 대한 기본적 의료보험 적용. 공 공의료기관에 성전환자/트랜스젠더를 위한 긴급 의료 지원 서비스 확충

건강정책학회SIG:

한국 의료서비스의 젠더 및 성소수자 감수성(Sensitivity)

맺으며

- 외국에 비해 국내에서 성소수자 '감수성' 의료에 대한 인식 부족, 환 자로서의 권리에 대해서도 아직 걸음마 단계
- 성소수자의 권리란 '드러내지 않으면' 비성전환-이성애자와 동일한 권리로 인식되기 쉬움. 그러나 의료 현장에서 성(별)정체성을 드러 내지 않을 수 없는 순간들이 다양하게 있으며 일단 드러낸 이후에 겪는 고통과 어려움은 개별적으로 감내해야 할 몫으로 남겨져 있음.
- 성소수자의 경우: 의학과 관련한 집단적 공통 경험을 인지함으로써 만이 집단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첫 발자국을 내디딜 수 있을 것 임.
- 의료계의 경우: 의료 현장 내외의 성적 불평등에 대해 인식할 수 있어야 '감수성' 뿐만 아니라 제도적 불평등에 대응해 낼 수 있을 것임

건강정책학회SIG: 한국 의료서비스의 젠더 및 성소수자 감수성(Sensitivity)

감사합니다